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4호
----------	--------

제출년월일 2025. 2.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의 확대로 고액채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 자주재원의 확보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 대상 정비 (안 제3조)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급 대상 정비

다.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안 제4조)

- 정리보류 된 채납액에 대한 지급 기준 추가

: 소멸시효 잔여일수별 100분의 6 ~ 100분의 10 차등 지급

라. 포상금 지급 한도 확대(안 제5조)

- 징수 건당 및 채납 전담 임기제 공무원 월 지급액 한도 확대

: (현행) 건당 30만원, 월 300만원 ⇒ (개정) 건당 40만원, 월 400만원

마. 그 밖에 약칭 등 정비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2025년 본예산 반영(비용추계 미작성)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1. 22. ~ 2. 11.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원안 동의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나) 경 기 도 : 세정과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5. “체납액”이란 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를 “법 제146조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3조(중전의 제2조) 제1항제4호(중전의 제2호) 중 “지난연도 체납액” 을 “체납액”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제6조” 를 “제7조” 로, “김포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를 “제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2호” 를 “제3조제1항제4호”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치 그” 를 “영치 또는 그”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 을 “제3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2조제1항” 을 “제3조제1항” 으로 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급

제4조(중전의 제3조)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2조제1항제1호” 를 “제3조제1

항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2호” 를 “제3조제1항제4호” 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본문 중 “제2조제1항제3호” 를 “제3조제1항제5호” 로 한다.

라. 정리보류된 체납액(당해연도 정리보류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마.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8

바.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5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부터 제2호” 를 “제4조제2호부터 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만원” 을 “40만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00만원” 을 “400만원” 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 “신고” 이” 를 “ “신고” ” 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2조제3항” 을 “제3조제3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3호” 를 “제4조제4호” 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를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징 수 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징수과장 박 경 애
	팀 장 직위·성명	징수기획팀장 이 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세무주사보 김 지 훈(☎2545)



<신 설>

<신 설>

1. (생 략)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3.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제1조에 따른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  
----- 체납액-----  
-----

5. -----  
-----  
-----  
----- 제7조-----  
-----

----- 시장-----  
-----

② -----  
-----  
----- 제4조-----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4호 -----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2.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범칙행위의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 4. (생략)

④ 제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신설>

2. (생략)

<신설>

-----  
-----  
-----.

- 1.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  
-----
- 2. -----  
-----  
----- 영치 또는 그 -----  
-----

3. · 4.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1항-----  
-----  
-----.

-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  
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신 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  
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  
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  
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⑤ 제3조제1항-----  
-----  
-----  
-----  
-----  
-----.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  
2조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1항제3호 -----  
-----  
-----
3. 제3조제1항제4호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리보류된 체납액(당해연도  
정리보류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  
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  
마.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  
효 잔여일수가 1년 이상 3년 미  
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8

<신 설>

라. (생 략)

- 3.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1.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생 략)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

바. 정리보류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사. (현행 라목과 같음)

- 4. 제3조제1항제5호 -----  
-----  
-----  
-----  
-----  
-----  
-----  
-----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2호부터 제3호 -----  
-----  
-----  
-----

- 1. -----  
--- 40만원-----  
-----
- 2. (현행과 같음)
- 3. -----  
-----  
-----  
-----  
----- 400만원-----

제6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  
-----  
----- “신고” -----

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3.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생략)

⑥ ~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지급방법) ① (생략)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3항-----  
-----

4. 제4조제4호-----  
-----

5.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조제1항제3호  
부터 제4호-----  
-----

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  
한다.

③ (생 략)

제9조 · 제10조 (생 략)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  
와 같음)

**지방세기본법****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 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포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3.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제1조에 따른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범칙행위의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④ 제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5.3.>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 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세정업무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2.19.>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2.19.>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2.19.>

⑧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2.1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이 조례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2.19.>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6.3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 나. 비용 발생 요인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 확대

- 징수 1건당 30만원, 체납 전담 임기제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 징수 1건당 40만원, 체납 전담 임기제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400만원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비용추계 : 미작성

###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 4. 작성자 : 징수과장 박경애    징수기획팀장 이준영    담당자 김지훈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574호
----------	--------

제출년월일 2025. 3. 12.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중요한 자료” 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정보’ 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상위법에서는 ‘정보’ 가 아닌 ‘자료 또는 정보’ 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조문에서 이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중요한 자료” 를 정의할 때 ‘정보’ 를 ‘자료 또는 정보’ 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따른**”을 “**따른 자료 또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3항에 <u>따른</u> 정보를 말한다.</p> <p>3.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따른 자료 또는</u> -----.</p> <p>3. ~ 5. (현행과 같음)</p>